

# 2022년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3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의 단속, 홍보 및 계도활동(야간활동 포함)
- 예산현황

(단위:천원)

사업명	위탁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2022년	2021년	증감액		
2022년도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 정비 사업	216,500	192,100	24,400	- 생활임금 적용 - 공공휴대폰 통신비 - 근무복 지원	-

## ○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 (1년간)
- 위탁예산 : 금216,500,000원(금이억일천육백오십만원)
- 위탁단체 : 하남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
(보훈)이나 보훈단체

## □ 세부 추진계획

-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수탁단체 선정
  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  - 위탁기간 : 2022. 1. 1~ 2022. 12. 31.(1년)
  - 모집단체 : 하남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보훈)이나 보훈단체
  - 선정방법 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2021. 11월 :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1. 12월 : 수탁자 선정(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)
- 2021. 12월 : 위·수탁협약 체결
- 2022. 1월 :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정비사업 민간위탁 실시

## □ 관련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-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-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## □ 주관부서 검토의견

- 미사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의 상가, 오피스텔 간 경쟁이 심화되어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하고 있고 교산지구, 하남c구역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관련 광고물이 급격히 증가되어 도시미관이 저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
- 급증하는 불법광고물에 비해 현재 가로정비팀의 단속인원으로는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단체에 업무위탁을 실시하고자 함

## 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발췌서 1부
- 2022년 불법 유동·유해광고물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계획 1부. 끝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#### 제3조(적용범위)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##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#### 제6조(의회 동의 등)

-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-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  - 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위탁사무명
  -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3. 위탁사무 내용
  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  - 5. 민간위탁기간
  - 6. 수탁자 선정방식
  -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 -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  - 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  - 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##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)

-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  - 1.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
  - 2.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능력
  - 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  -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  - 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  - 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 
<개정 2021.1.12.>
-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21.1.12.>

#### 제7조의2(선정방법 등)

-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.12.>

1.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,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<신설 2021.1.12.>
  2. 민간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<신설 2021.1.12.>
  3. 그 밖에 제1호,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<신설 2021.1.12.>
-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,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.12.>

#### 제8조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

- ① 수탁기관 선정, 성과평가, 재위탁,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1.12.>
  1.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<신설 2021.1.12.>
  2.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<신설 2021.1.12.>
  3.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<신설 2021.1.12.>
  4.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<신설 2021.1.12.>
  5.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신설 2021.1.12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#### 제5조의2(국가와 시·도의 지원 및 시·군·자치구 등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### □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#### 제22조(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)

-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1.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2.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
-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